



'20.12 결산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결산서류 공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과 결산서류 공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제출기한 : **3월 31일까지**
- 홈택스 전자제출(www.hometax.go.kr) : 홈택스(로그인) > 신고/납부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자료는 「신고도움자료 확인하기」에서 확인가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 : **3월 31일까지**
- 제출대상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제출기한 : **4월 30일까지**
- 제출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 홈택스 공시(www.hometax.go.kr) : 홈택스(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결산서류 등 공시
- ※ '19.1.1.이후 공시하는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이행시 회계감사 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도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사항」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셔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세무서장 (직인생략)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 등과 관련한 문의는 뒷면에 기재된 세무서 상담전화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사항

*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익법인 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구 분	내 용	
전용계좌 개설 신고	•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단체 제외)
	• 신고기한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대상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
결산서류 공시	•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대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학교법인, 유치원 제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법인령 §38, §39)	• 대상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홈택스, 단체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다만,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봄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구 분	내 용	
장부의 작성·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매각대금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운용소득	1년 내 7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성실공익법인 80%)
	의무지출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주식 10%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은 3%)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주식 관련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 일반공익법인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성실공익법인 20%)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을 총자산가액의 30%(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시 50%) 초과보유 금지
이사구성 등 제한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	
기 타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등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참고